##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 강준현·홍성국·임호선

박영순・양정숙・황운하

김수흥 • 인재근 • 기동민

김상희 · 이학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2012. 12. 18.)된 이후 건설청장이 조성·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시설물 중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 해당 시설물 역시 무상양여 대 상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

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9특수 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및 지식산 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이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 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삭제 등). 법률 제 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2항 본문 중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를 "무상으로 양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 1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 1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 13. 제39조14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 14. 제39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 15.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 16.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 17. 제63조의7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	2
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취	
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	
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	
치시교육청에 <u>매각하거나 무상</u>	<u>무상으로 양여</u>
<u>으로 양여</u> 할 수 있다. <u>다만, 매</u>	<u>&lt;단서 삭제&gt;</u>
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	
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u>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